보건복지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

1. 관련
 가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(보험급여과-2933호, '22.5.31.)
 나. 「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」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3782호, '22.7.26.)
 다.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(보험급여과-4853호, '22.9.29.)
 라.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(보험급여과-5881호, '22.11.28.)

2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주요 내용 :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, 만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
○ 대상기관 :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
 * 정신병원,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
○ 적용기간 : 2023.1.1. 진료분 부터 2023.1.31.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

붙임 1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. 끝.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중앙방역대책본부장,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대한의사협회,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기초의료보장과장,서울특별시장,부산광역시장,대구광역시장,인천광역시장,광주광역시장,강원도지사,대전광역시장,충청북도지사,울산광역시장,충청남도지사,경기도지사,전라북도지사,전라남도지사,경상남도지사,경상북도지사,제주특별자치도지사,세종특별자치시장

주무관 길성원 보험급여과장 전결 12/09 정성훈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6094 2022.12.09. 접수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/ sungwon511@korea.kr
전화 044-202-2740 전송 044-202-3934 / sungwon511@korea.kr / 비공개(5)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